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1-017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2021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2021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CONTENTS

PART 1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 3

PART 2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방법 ····· 11

PART 3 대체교사 지원사업 Q&A ····· 27

PART 4 부록 ····· 35

PART

1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01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봐요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 가족상,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본 사업은 인력파견과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보육공백을 최소화시켜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 대체교사 인력 지원과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인력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한 대체교사의 유휴인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3,140원/일).

인건비 지원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의 인력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대체교사 지원절차를 한눈에 알아보아요!

어린이집

❶ 보수교육, 연차휴가,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❷ 지원 사유에 따라 신청
- 상시사유: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 긴급사유: 유선·FAX

육아종합지원센터

❸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고려)

❹ 대체교사 배치

❺ 배치결과 공지

어린이집

❻ 온라인 만족도 평가(종료 후 5일 이내)

02

대체교사에 대해 알아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소개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철(7월·8월), 보수교육 주간, 결혼이 많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채용 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보육업무 범위가 궁금해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는 그대로!

대체교사는 전반적인 해당 반 보육과정을 운영하며 등·하원 지도, 영·유아 보육, 일지 작성, 교실과 담당 구역 청소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의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놀이 지원을 위해 보육계획은 담임교사가 작성해 주세요. 대체교사는 보육계획을 바탕으로 흥미나 요구를 파악하여 놀이 흐름에 따라 융통적으로 놀이를 지원합니다.

대체교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09:00~18:00(월~금,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시간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채용현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관련안내

대체교사의 휴게시간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체교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p.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PART

2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방법

01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사유 및 일수

국·시비 지원(공통)

구분		지원내용(국·시비 지원)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최대 10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구분		지원내용(국·시비 지원)		
긴급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수시신청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신청	파견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1개월 단위로 전월 1~10일까지 사전 신청)		

시비 지원

• 지원기준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시 우선 지원(재교육은 지원 제외). 단, 교육 지원 신청이 없을 시 국비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 공백

• 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1개월 단위로 전월에 1일~10일까지 사전 신청)

대체교사 인력 지원 및 인건비 지원은 담임교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갈 경우에 지원됩니다. 담임교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가고,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을 받는 다면 모든 지원비는 환수됩니다.

02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 지원 신청기간

1개월 단위로 전월 1일~10일 사전 신청

긴급사유 대체교사 신청기간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보육공백(교육, 연차 등)에 대해서는 매월 정해진 기간에 사전 신청하되 갑작스러운 병가와 가족상, 모성보호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한 보육공백의 경우는 유선·fax를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배치된 인력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조건: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2021년 보육사업안내」 453p.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참고

▶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한 대체교직원
- 지원조건: 매월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이면 매월 최초 근무일)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

※ 「2021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51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참고

0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교사 인력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인력 지원은 대상과 지원 사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다르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 **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사유** 보수교육, 본인결혼, 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긴급사유(아동학대 후속조치, 보육교사 권익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 **대상**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사유**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인력풀 교육)시 우선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 공백(기타사유)을 포함한 국비 지원 사유 지원

※ 신청사유가 보건복지부 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선 신청

- **대상**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사유** 아동학대 후속조치, 보육교사 권익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긴급한 보육공백발생 → 유선신청 → **서면으로 대체교사 신청**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개별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인력 지원 문의 후 사전확인증 **발급 요청**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인력이 없을 시 **어린이집**으로 **사전확인증 발급**
어린이집	**자치구**에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으로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허위신청 시 패널티 적용

보육교사의 연차나 교육, 병가, 경조사 등으로 보육공백이 발생 될 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허위 신청으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티 적용사유

1) 대체교사와 대체교사를 신청한 현 보육교사가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지자체 대체교사(인건비 지원)와 이중지원 받은 경우
3)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한 경우
   ※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인 경우 신청 가능
4)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허위 사유로 신청한 경우 등)

패널티 적용

1) 적발 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 회기 신청 모두 취소
2) 1회 적발 시: 1회기 신청 불가, 다음 회기 대체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3) 2회 이상 적발 시: 4회기 신청 불가

04

어린이집의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대체교사 근무 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내서」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월간·주간·일일 보육계획안 등),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대체교사가 근무하기 일주일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내서」 양식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확정 안내를 할 때 대체교사 정보 및 협조사항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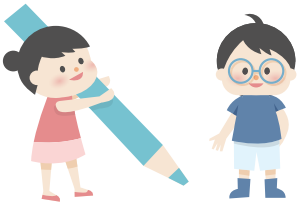

어린이집 안내서

대체교사 업무에 관한 어린이집 안내서(예시)
(어린이집 제출용)

어린이집명	_____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전화번호	어린이집		이메일 주소	
	휴대폰			
주소				
신청 보육교사			담당반명 및 연령	___반 (만__세)

구분	세부내용(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합니다)
보육 시 유의사항 (주의사항 및 특성)	* 대체교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영유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는 사전에 정보 제공하기)
아침 준비사항	
실내·외 어린이집 시설물 이용방법	
기타 (주간행사일정 등)	
어린이집 준비사항	* 대체교사가 근무하는 반의 영유아에게 이름표 착용 요망

※ 담임선생님께서는 업무분장, 수업준비, 수업진행방법, 자료비치장소, 원아특성과 안전,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 자세한 기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획에 따른 놀이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획안 및 놀이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의 놀이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근무 중

첫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대체교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어린이집의 현황, 대체교사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 내용 등을 이해하여 어린이집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 및 논의 되어야 하는 사항

- **어린이집 현황**
  -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의 특징
  -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
- **대체교사 업무 관련 내용**
  - 지원학급 연령 및 특성
  - 영·유아 출석부 및 명단, 개별 특성
  - 일지 및 알림장 작성 안내
  - 학부모와의 관계
  - 등·하원 지도 방법
  - 급·간식 지도 방법
  - 약물 투약 시 주의사항
- **기타**
  - 근무 및 휴게시간
  - 그 외 어린이집 특성에 따른 근무 시 유의사항

※ 오리엔테이션 자료 작성은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대체교사 지원 시 오리엔테이션 자료 예시

대체교사 근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1. ○○어린이집 현황

1) 원훈: 건강한 어린이, 더불어 함께하는 인성이 바른 어린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2) 인원: 영유아 00명, 교직원 00명(담임교사 00명 포함)

3) 시설현황

- 1층: 보육실(만0세~만2세), 조리실, 교사실(보건실), 원장실, 소모품실
- 2층: 보육실(만2세, 만4,5세), 유희실, 교재실
- 3층: 보육실(만3세, 만5세), 교재실
- 실외: 모래놀이터, 대근육 놀이터, 텃밭

4) 등·하원방법: 도보, 통학버스

2. 대체교사 업무내용

1) 담당연령: 만4세(○○반, 2층 위치), 유아 00명

2) 업무내용: 담당반의 전반적인 보육업무 및 담당 보육실 및 사용공간 청결

- 등원 전 준비(교실 환기, 음용수 준비, 일과 수업준비 등)
- 담당반의 일과운영: 별지 참조
- 일과 후 제출서류(보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등·하원 상황표)

3) 영유아 개별특성: 별지 참조

4) 학부모와의 상담

- 파트너 교사가 있는 경우: 영유아 관찰 내용을 파트너 교사에게 알림
- 파트너 교사가 없는 경우: 영유아 관찰 내용 중, 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은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수첩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주임교사와 상의 후 안내

5) 통학버스 등·하원 지도 방법

- 등원 지도: 명단에 있는 영유아의 등원여부를 확인함(별지 참조)
- 하원 지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명단을 확인, 층별 모이는 장소로 이동

6) 투약방법

- 투약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만 투약 가능

Tip. 대체교사 지원 시 오리엔테이션 자료 예시

3. 근무 및 휴게시간

1) 근무기간: 0월 0일 ~ 0월 0일
2) 근무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휴게장소: 1층 교사실 또는 어린이집 유휴 공간(어린이집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보고 후 휴게시간 사용)

4. 근무 시 유의 사항

1) 안전사고 발생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파트너 교사, 옆반 교사, 사무실)
   - 일과 운영 시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 요청
     만4세 하늘반 교사(원내 203번), 선임교사(원내 100번), 원장(원내 106번)

2) 퇴근 전
   - 일과진행 결과에 대하여 주임교사에게 구두 보고
     (아동 및 학부모 관련, 어려웠던 일 등)
   - 익일 보육을 위한 준비(수업 관련, 보육실 및 화장실 청소)

3) 옷차림
   - 보육활동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
   - 앞치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결하게 관리하여 착용

○○어린이집(02-0000-0000)

대체교사 근무 후

대체교사가 근무를 마친 뒤, 대체교사를 신청했던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 작성은 지원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작성해주시는 설문지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의견을 적어주시더라도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어린이집용

설문지
(어린이집용)

안녕하십니까?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이번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귀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Ⅰ.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설문지 작성자	□ ① 어린이집 원장 □ ② 보육교사 □ ③ 기타
2. 어린이집 유형?	□ ① 국공립 □ ② 사회복지법인 □ ③ 민간 □ ④ 가정 □ ⑤ 직장 □ ⑥ 협동 □ ⑦ 법인·단체
3. 어린이집 현원?	□ ① 20인 이하 □ ② 21 ~ 40인 미만 □ ③ 40 ~ 80인 미만 □ ④ 80인 이상
4. 보육교사 수?	□ ① 5인 이하 □ ② 6인 ~ 10인 미만 □ ③ 10인 ~ 20인 미만 □ ④ 20인 이상
5.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② 만족]에 응답하면 6번으로 이동 [③ 불만족/④ 매우 불만족]에 응답하면 7번으로 이동
6. 만족한다면 이유는?	□ ① 법정 휴가 사용 □ ②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 최소화 □ ③ 어린이집 원활한 운영에 도움 □ ④ 연계사용으로 재충전의 기회 제공 □ ⑤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 해소 □ ⑥ 기타 ( )
7. 불만족이다면 이유는?	□ ① 시스템 신청의 어려움 □ ② 지원받는 교사의 자격일수 제한 □ ③ 1년 이상 담임교사 우선순위 적용 □ ④ 대체교사 근무태도 □ ⑤ 기타 ( )
8.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용 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 ① 보육교사가 직접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음 □ ② 대체교사 근무에 대해 학부모가 신뢰하지 않음 □ ③ 지원 기간이 짧음 □ ④ 기타 ( )
9. 대체교사를 재신청할 의향은?	□ ① 있다 □ ② 없다
10. 건의사항 (100자 이내)	

Ⅱ.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된 대체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에게 제공한 사항은?	□ ① 등록, 교직원, 부모 등에게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안내 □ ② 업무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 ③ 업무 인수인계 자료(보육계획안, 하루일과표 등) 제공 □ ④ 수업에 필요한 자료 등 제공 □ ⑤ 기타 ( )
12. 지원한 대체 교사의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② 만족]에 응답하면 13번으로 이동 [③ 불만족/④ 매우 불만족]에 응답하면 14번으로 이동
13. 만족한다면 이유는?	□ ① 어린이집 교직원들과의 협력 □ ② 어린이집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 ③ 성실한 근무태도 □ ④ 영유아에 대한 이해 □ ⑤ 긍정적인 상호작용 □ ⑥ 원활한 수업진행 능력 □ ⑦ 기타 ( )
14. 불만족이다면 이유는? (100자 이내)	

특성	문항	우수 ↔ 부족 5	4	3	2	1
근무태도	1. 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2. 교사의 역할을 숙지하여 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는가?					
	3. 문제사항 발생 시 원장이나 교사와 의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수행능력	1. 영유아 놀이 중심의 보육활동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2.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놀이방법을 구성하고 보육활동을 하였는가?					
	3. 일과운영 시 영유아의 놀이관계 상황, 흥미지속 등을 파악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는가?					
	4. 영유아에게 밝은 표정으로 격려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가?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지 작성방법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www.cpms.childcare.go.kr)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설 로그인 → 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업무평가지 작성**

평가지 작성을 완료하시면 설문지 N이 설문지 Y로 표시됩니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시설 로그인 → 대체교사 관리 → **업무평가지 작성**

평가지 작성을 완료하시면 업무평가지 미작성이 업무평가지 작성으로 표시 됩니다.

PART

3

대체교사 지원사업 Q&A

01

대체교사 지원사업 Q&A

Q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체교사를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무료인가요?

A 대체교사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Q 긴급 사유에 대해서는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A 서울시 25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사유에 대해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문의**하시기 바라며, 배치된 인력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 주중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A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 주중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A 1개월 단위로 근무를 희망하는 **전월 1일~10일 사전신청**합니다.

Q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채용현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체교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선생님이 명단에 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는 명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반에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대체하는 장기 채용 담임교사의 대체교사 경우, 시스템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교사겸직원장의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A 교사겸직원장의 연간 최대 지원가능 일수는
10일 입니다.

Q 가족상 사유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지원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상은 사유 발생 당일 또는 익일이내 신청 가능하며,
지원일수는 **사유별 지원가능 일수**에 따릅니다.
또한 보육교사에게 부여되는 가족상 휴가의 범위와 일수는
어린이집 내부규정을 준용합니다.

Q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대체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연령제한이 있나요?

A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 대체교사를 채용할 시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만 60세까지 채용 가능합니다.

Q 대체교사에게 보육실 이외의 대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도 지원기간 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다른 환경, 낯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하는 대체교사에게 지정 업무 외
과도한 청소 및 업무 요구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일정에 따라 청소나 다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전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대체교사에게 차량 지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짧은 기간 근무하여 영유아들의 이름,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 탑승 및 차량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Q 대체교사를 지원받고, 해당 보육교사는 출근해서
다른 업무를 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를 지원받고 해당 보육교사가 업무를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근무로 간주되어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대체교사
지원이 중단되며, **어린이집은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를 지원받기로 한 보육교사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Q 대체교사지원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지원 중단을 희망할 경우,
먼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협의 한 후
지원중단요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Q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보육공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대체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있고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퇴사한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자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자에 대해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자는 대체교사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일 8시간을 근무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자를
대체하는 대체교사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이 백신접종을 맞았습니다.
백신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대체교사
지원을 받고자하는데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대체교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이라면 "코로나19 백신" 사유로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접종 익일 1일 유급휴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이상반응 지속 시 **접종 익일 2일 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 당일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에 대해 최대 4시간까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평일 누리과정 집합연수에 대하여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평일 누리과정 집합연수 참여 시
'보수교육(1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전월 1일~10일에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년 6월까지 한시 적용이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	팩스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9	02)772-9820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737-0890	02)737-0898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263-2626	02)2279-7294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749-9673~4	02)749-9675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5675~6	02)499-7525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67-1827~9	02)467-1880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247-5843~5	02)2237-5801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5-0030~1	02)495-0036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918-8080	02)918-8083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994-7480~1	02)904-7480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494-3341~2	02)3494-3343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930-1944	02)930-1945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51-8931	02)351-3649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51-3629, 3630	02)3217-9551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08-0202	02)305-0006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646-7790~1	02)2646-7793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064-2730~2	02)2064-2733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59-5678	02)859-5511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94-2264~5	02)805-1835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33-6022	02)833-6021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23-4567	02)823-4586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51-2834~5	02)851-2846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598-9340	02)2155-8681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546-1735~7	02)511-1728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0505	02)449-0535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86-3516	02)484-9255

PART

4

부록

01

서울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타사업

서울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 **지원내용**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조리원 파견
- **업무내용**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존(비)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집에 대체 조리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
- **지원대상**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지원기준**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우선순위		지원내용(시비)		
긴급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 건강관리 등	

우선순위		지원내용(시비)	
상시	5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1일~3일
	6	연가(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7	예비군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 **신청방법** 어린이집이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go.kr)에서 직접 신청
- **신청기간** 전월 1일~10일
- **지원절차**

1.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서울시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3. **대체조리원 모집·채용·파견**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4. **대체조리원 근태 확인·통보**
   어린이집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5. **보수 지급·경력 관리**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의사항** 대체조리원에게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 불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사항**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지원 보조사업 우선 신청
  ※ 국비·시비 동시 지원 불가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영아, 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연장보육,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시비 2시간 추가지원 이외의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보조교사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보건복지부 보조교사 기준에 따름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461~464p 참조

• 시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지원내용**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월 1,011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업무내용**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
- **지원대상**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하여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조건** 정원충족률 40% 이상,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1개소당 1명 지원

• 시비 2시간 추가지원 기준

- **지원내용**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1일 2시간 추가 지원
  - ※ 인건비 지원: 월 505,500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 추가 지원 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발생 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대상** 국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 ※ 신청어린이집이 다수일 경우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영아, 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우선지원
- **지원인원** 1개소 당 1명 지원

• 보육도우미

- **지원내용**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근무
- **업무내용** 청소, 급식(조리) 등의 업무 및 보육교사 행정 업무 지원
- **지원대상** **[급식(조리)지원]** 민간(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 급식(조리)을 주요 업무로 하며, 그 외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청소 등 지원 가능

  [청소 지원] 전체 어린이집
  - ※ 거점형 야간보육 또는 열린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 ※ 청소를 주요 업무로 하며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등 지원 가능
- **지원조건**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1개소당 1명 지원(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와는 별도 지원 가능)
  - ※ 인건비 지원: 월 916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운영안내

구분	보조교사 (2시간 추가 지원)	보육도우미	비고
자격 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성범죄경력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 된 자 채용제외
주요 역할	**시비 보조교사**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 **2시간 추가 지원**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시 국비 보조교사 역할에 따름	청소, 급식(조리) 등 주요업무 지정하되 이외의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가능 ※ 조리업무는 가능하나 조리원으로 임면 불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 조건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2시간 추가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지원 제외 대상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기타 유의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차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9~'20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

- '20. 1. 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 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익일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내용** 인건비 인당 월 1,367천원(4대 보험료는 어린이집 부담)
- **업무내용**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지원 등 장애아보육교사 업무지원
  ※ 운전, 청소, 어린이집 원장 업무보조 등 어린이집 일상 업무보조는 불가함
- **지원대상**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지원기준** 2개반 당 1명 지원(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근로기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어린이집과의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에 의하여 최종 확정(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어린이집 추가 부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 **지원내용**

① 원장: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
※ 정부 미지원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② 보육교직원: 전체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채용된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평일 8시간 근무 원칙). 단, 조리원은 현원 40인 이상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한함
  ※ 월급여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지원 가능
-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근로계약 기준)한 대체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 조리원: 현원 40인 이상 정부지원어린이집
  ※ 제외대상: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지원 불가

•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금액
원장	정부지원시설	월 195,000원
보육교사 (0~5세반)	정부지원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월 145,000원
	민간시설	월 200,000원
	방과후교사	100,000원
조리원	정부지원시설(현원 40인 이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전체)	월 145,000원

※ 방과후 어린이집원장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 시에만 방과후교사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조건

- 매월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이면 매월 최초 근무일)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 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아동 1명 이상 보육)
- 아동 대 교사비율 미준수 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원

기획·총괄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희숙(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장)
이소연(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감　　수 임수언(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2021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발 행 일 2021년 5월 발행

발 행 인 이남정

발 행 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디자인·제작 디자인세륜
서울 02)2273-5167, 세종 044)863-5167

본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책 내용의 무단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함

2021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